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현실화 필요



현재 돼지 분뇨 배출원 단위가 8.6ℓ로 되어 있으나 이 배출원 단위가 현재 축산여건 변화와 맞지 않아 돼지 배출원단위 재조사와 단위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성장단계별 배출원 단위 구분 현실성 없어

최근 농림부 및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환경부가 카톨릭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돼지의 배출원 단위가 전국 표준에 적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조사농가 대상수가 5개 정도로 전해지면서 그 대표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카톨릭대는 지난 '04~'06에 걸쳐 실시한 축산계 오염물질 배출원 단위조사를 통해 돼지의 분뇨발생량(1일1두 기준)이 분 1.49kg, 뇨 3.08kg 등 평균 4.57kg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돈의 경우 2.7kg(분 1.0kg, 뇨 1.70kg) ▲육성돈 4.03kg(분 1.40, 뇨 2.63) ▲성돈 4.97kg(분 1.67, 뇌 3.30) ▲모돈 6.57kg(분 1.90, 뇌 4.67) 등 성장단계별로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와 축산연구소, 대한양돈협회, 농협 등 축산업계는 이번 조사결과를 현행 법령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장은 같아 하고 있다. 성장단계별 구분을 통해 배출원단위를 적용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축종별 배출원 단위 재설정 반드시 필요

특히 현재 오분법 상의 배출원 단위는 1999년에 축산연구소에서 연구하여 설정된 것으로, 지난 '99년과 비교해 현재의 축산여건이 크게 변화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각종 규제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폐수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 재래식 돈사가 전체 양돈농가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만큼 배출원단위 설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그 주요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축사 형태와 전국 양돈농가의 평균 배출원 등을 조사하고 축종별로 배출원 단위를 재설정하여 양돈농가들에 대한 과도한 법률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비현실적 배출원 단위로 농가 어려움 기증돼

이와 관련하여 양돈협회는 “현행 비현실적 배출원단위로 인해 양돈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처리 시설 및 규모설정 기준 마련을 통한 적정처리시설 유도로 양돈농가들의 시설비부담 저감은 물론 과도한 법률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내년도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할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현안 과제 중 축사형태와 전국 양돈농가의 평균 배출원 조사 및 축산연구소의 사양실험을 거쳐 가축배출원 단위의 재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양돈협회는 2007년도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으로 돼지 분뇨의 항생제·증금속 검사 및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고기 구별법 개발, 돼지고기 성별에 따른 경제성 분석, 돼

현재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세정수 발생량 기준

(kg/두/일, 닭 g/수/일)

구 분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가축분뇨 배출량	10.1	24.6	1.6	127.4	90.5
	4.5	11.0	2.6	-	
	계(A)	14.6	35.6	4.2	127.7
세정수(B)	0.0	10.0	4.4		
축산분뇨배출원 단위(A+B)	14.6*	45.6*	8.6	127.7	90.5

축종별 표준체중(kg/두) : 한우 350, 젖소 450, 돼지 60

*는 환경부 고시 제1999-109호('99. 7)

지고기의 근내지방도 향상 및 삼겹살 생산량 증진을 위한 한국형 종돈개량 시스템 구축, 사료내 인분해효소 사용시 경제성 분석, 환경개선제 효능 검증체계 구축, 퇴·액비의 토양개량 능력 검정 연구 등을 제안했다. 양돈

대한양돈협회 휴대폰 시세서비스

-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한양돈협회 시세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 연간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일 당신의 휴대폰에 양돈시세가 나타납니다.

- 대상자: 양돈협회 회원 및 전국 양돈농가
- 제공내용: 일일 전국, 서울, 경남 비육돈 평균경락가격, 긴급 정보
예) 전국 3,728/2,755원, 서울 3,583/2,530, 경남 3,768/2,605
- 요금:
 - 회 원: 3만원/년(부가세 포함)
 - 비회원: 5만원/년(부가세 포함)
- 납부처: 농협 088-01-005531 대한양돈협회
- 문의처: 본회 지도·기획부(담당 이광호) 02)581-9751
 - * 신청자 접수 완료 당일부터 신청자 휴대폰에 알림



사 달
법 일
대 한 양 돈 협 회